

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심사 보고

2000. 9. 30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년 9월 6일
-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(2000. 9. 28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차 주 영)

가. 제안이유

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(문화관광부 고시2000-8호, 2000.7.7)에 따라 충청북도 철인의 영문로고 타입을 로마자 표기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 제3조제2호의 별표2 충청북도 철인의 영문로고 타입 개정

- CHUNGCHONGBUK-DO ⇒ CHUNG**CHE**ONGBUK-DO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만)

충청북도 상징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이는 문화관광부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고시에 따라 충청북도
철인의 영문 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모음 “ㅓ”를 영문 “eo”로 표기하기로 함에 따라 충청북도
“청”자를 CHONG ⇨ CHEONG로 개정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락”

5. 토론요지 : “생 락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: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2] 철인종 “CHUNGCHONGBUK-DO” 를

“CHUNGCHEONGBUK-DO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2] 철인 	[별표2] 철인 

관 계 법령 발췌

〈문화예술진흥법〉

제6조(국어심의회) ①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발굴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.

제7조(어문규범) ①국가는 한글맞춤법, 표준어규정, 외래어표기법, 국어의로마자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(이하 “어문규범”이라 한다)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〈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〉

제14조(기능)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(이하 이 장에서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7.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사항

〈국어의로마자표기법〉 -문화관광부 고시 2000-8호, 2000. 7. 7

제2장 표기 일람

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.

1. 단모음

ㅏ	ㅓ	ㅗ	ㅜ	ㅡ	ㅣ	ㅐ	ㅔ	ㅚ	ㅟ
a	eo	o	u	eu	i	ae	e	oe	wi

제5항 ‘도, 시, 군, 구, 읍, 면, 리, 동’의 행정 구역 단위와 ‘가’는 각각 ‘do, si, gun, gu, eup, myeon, ri, dong, ga’로 적고, 그 앞에는 불임표 (-)를 넣는다. 불임표(-)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.

(보기)

충청북도 Chungcheongbuk-do	제주도 Jeju-do
의정부시 Uijeongbu-si	양주군 Yangju-gun
도봉구 Dobong-gu	신창읍 Sinchang-eup
삼죽면 Samjuk-myeon	인왕리 Inwang-ri
당산동 Dangsan-dong	봉천 1동 Bongcheon 1(il)-dong
종로 2가 Jongno 2(i)-ga	
퇴계로 3가 Toegyero 3(sam)-ga	